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근거 마련〉

■ 정연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03호)

2024.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전완희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근거 마련	2
※ 참고자료	
1. 인구감소지역 및 시도별 관광지·관광단지현황	2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연욱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4. 7. 18.
3. 회 부 일 : 2024. 7.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관광단지 제도’는 1975년에 도입된 이래 총 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인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추세 속에서 지역소멸 문제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지방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제52조 등).

Ⅲ. 검토의견

1.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의 지정권자를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함으로써, 인구감소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52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②소규모 관광단지에 대해서도 기존 관광지·관광단지에 대한 옥외광고물 설치 특례(안 제48조), 지정대상 지역에 대한 조사·측량 실시(안 제53조), 인·허가등 의제(안 제58조), 준공검사(안 제58조의2) 등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 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 ----- -----

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 ⑥

(생 략)

<신 설>

<신 설>

제53조(조사·측량 실시)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광지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관광단지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 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 하는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관광단지의 지정, 지정취소 및 면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제53조(조사·측량 실시)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시장·군수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 등(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52조 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시장·군수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③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성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 (생략)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제4항까지에도-----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제6항에-----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③·④ (생략)

⑤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는 필요하면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민간개발자인 경우에는 제5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남은 사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①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등으로 지정·고시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등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에 따라 조성

②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시장·군수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제54조제5항-----

-----.

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① -----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

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등 사업시행자(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개발자가 사업 중단 등으로 환경·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제49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평가 결과 조성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계획 승인신청 또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

-----.

②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제4항에-----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시장·군수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54조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
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인·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 23. (생략)

② 시·도지사(제54조제5항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의 경우에는 특별자치
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는 제1항 각 호의 인·허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승인·
변경승인 또는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

제5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제6항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시장·
군수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

1. ~ 23. (현행과 같음)

② -----제54조제6항에-----

-----, 제52조
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

③ (생 략)

제58조의2(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
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준공검사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6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조성계획의 수립,
조성사업의 시행 및 관광지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00조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시·도지사”로, “실시
계획”은 “조성계획”으로, “인가”는
“승인”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는 “관광지등”으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자”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조성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광역도시

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의2(준공검사) ① -----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시장·군수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국토
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시장·군수의 경우에는 제52조
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로, “제88조제3항”은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인가”는

<u>계획 또는 도시·군계획</u> 은 “ <u>조성계획</u> ” <u>으로 본다.</u>	<u>“승인”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u> <u>시행지구”는 “관광지등”으로, “실시</u> <u>계획” 및 “도시·군계획·광역도시</u> <u>·군계획”은 “조성계획”으로, “도시</u> <u>·군계획시설사업”은 “조성사업”으로,</u> <u>“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u> <u>“사업시행자”로 본다.</u>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52조는 지역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관광사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관광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제도를 두고 있음.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동일하며, ‘관광지’는 지자체 주도로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 ‘관광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해 민관 혼합 또는 민간 주도로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으로서 지정기준, 규모, 및 사업주도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음.

[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제도 개요

구 분	관광지	관광단지
정의 (§2.6·7)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u>기본적인 편의시설을</u> <u>설치하는 지역</u> (지자체 개발 주도)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 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 하는 <u>관광거점지역</u> (민관 혼합 또는 민간 주도 방식)
지정 기준	○ 면적기준: 해당없음 ○ 시설기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8)에 따른 공공편익시설 구비	○ <u>면적기준: 50만㎡ 이상</u> ○ 시설기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8)에 따른 공공편익시설을 갖추고, <u>숙박시설 1종 이상</u> , 운동· 오락시설 또는 휴양·문화시설 중 1종 이상 구비
지정 절차 (§52)	시장·군수·구청장 신청 → 시·도지사 지정 * 지정 전 문체부 사전협의 필요	좌 동
사업 시행자 (§54)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관광공사 등 공공법인, 민간개발자
세제 지원 등 (개별법)	①개발부담금 면제 ②농지보전부담금 면제(농업진흥지역밖에 한함) ③대체초지조성비 면제 ④공유재산 임대료 감면(30% 이내) ⑤대체산림조성비 면제 (준보전산지, 50만㎡ 이상 관광지에 한함)	①좌동 ②좌동 ③좌동 ④좌동 ⑤대체산림조성비 면제 (준보전산지에 한함) ⑥취득세 일부 감면(50% 이내)
지정현황* (‘24.7.)	225개소 (전체 120km ² , 1개소 평균 약 53만㎡)	51개소 (전체 154km ² , 1개소 평균 약 302만㎡)

* 참고자료 1(인구감소지역 및 시도별 관광지·관광단지현황) 참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함)로 지정 시 개발 부담금,¹⁾ 농지보전부담금²⁾ 등이 면제되고, ‘관광단지’는 취득세도 일부 감면되며,³⁾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⁴⁾ 도로, 전기 등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⁵⁾,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관광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별표 1 제3호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2)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3.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별표2

3.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3호 관련)

감면대상	감면비율(%)	
	농업진흥 지역 안	농업진흥 지역 밖
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100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4) 「관광진흥법」 제5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인·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5) 「관광진흥법」 제5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광지 등의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권한⁶⁾ 등 혜택이 부여되어, 사업추진에 신속을 기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음.

한편, 저출산 고령화 추세 속에서 정부는 2021년 인구증감률, 고령화 비율, 출생률 등을 고려하여 89개 시(특별시 제외)·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및 발표(참고자료 1)하였고,⁷⁾ 2022년 6월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며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임.

특히, 정부 합동 「2024 경제정책방향」 발표(2024. 1. 4)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로 ① 생활인구 확대: 세컨드 홈 활성화, ② 방문인구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 ③ 정주인구 확대: 외국인 유입 지원 및 농·어촌 활력 증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바, 이 중 방문

6) 「관광진흥법」 제61조(수용 및 사용) ①사업시행자는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 용수권(用水權)이나 그 밖의 농지개량 시설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인구 확대를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 사업 중 핵심은 ‘소규모(미니) 관광단지 신설’임.

[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2024 경제정책방향) 중 “방문인구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 사업 개요

구 분	세부내용
관광기반 확충	○ <u>소규모(미니) 관광단지 신설</u>(기존 50만㎡→5~30만㎡), 지정·승인 권한을 이양(시·도지사→시장·군수) - 사업 확정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활용·연계하여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및 사업추진 지원 -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문체부, 기재부,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지원협의체 운영
금융	○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관광사업체에 대한 융자 조건 우대(1.25% 우대금리, 한도 100억원 확대 등), 관광기금 융자의 지방 우선배정(60% 이상 목표) 추진 - 관광기업 지원 모태펀드가 인구감소지역 중심 지방 관광인프라에 우선 투자되도록 인센티브 강화 등
세제·재정	○ 2025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및 사업장 설치 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한 지자체 주도의 투자 지원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관광단지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의 경우 기존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아닌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 관광단지’가 도입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 지정규모(5만㎡ 이상 30만㎡ 미만)를 기존 관광단지(50만㎡ 이상)보다 축소할 수 있고,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의 협의만으로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어, 기존 ‘관광단지’에 비해 작은 규모로 지역 수요와 특색에 맞는 관광자원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개발기간도 단축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임. 나아가 ‘관광단지’ 조성 후에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해 생활인구의 증가와 지역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소규모 관광단지’의 경우 개별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이 법에 따른 기반시설의 우선설치 등 기존 관광단지 적용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관광기금 용자 우대,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등의 혜택도 추가로 지원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보임.

[표] ‘관광단지’와 개정안에 따른 ‘소규모 관광단지’ 비교

구 분	관광단지 (현행)	소규모 관광단지 (개정안)	비고
적용지역	전국	인구감소지역 시·군(자치구 제외) :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자치구 5개를 제외한 84개 해당	안 제52조 제7항
지정권자 (지정 취소권자)	시·도지사 (문체부 협의 필요)	시장·군수(구청장 제외) (시·도지사 협의 필요)	안 제52조 제7항 및 제8항

구 분	관광단지 (현행)	소규모 관광단지 (개정안)	비고
조성계획 승인권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제외)	안 제5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사업 시행자 (조성계획 작성·시행)	시장·군수·구청장, 공공법인, 민간	공공법인, 민간 (시장·군수는 지정권자로서 제외)	안 제54조 제2항
지정규모	50만㎡ 이상	5만㎡ 이상 30만㎡ 미만 (문화체육관광부 안)	시행규칙 별표18 (시행규칙 개정 필요)
필수시설	3종 이상 : 공공편의시설, 관광숙박시설, 운동·오락·휴양·문화시설	2종 이상 : 공공편의시설, 관광숙박시설 (문화체육관광부 안)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소규모 관광단지’의 경우 지정권자를 기존 ‘관광단지’의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하면서,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역 중 부산광역시 자치구인 동구·서구·영도구, 대구광역시 자치구인 남구·서구가 ‘소규모 관광단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될 것임.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지역은 행정구역 인구의 50% 이상이 1개 이상 도심에 거주지역을 두는 ‘고밀도 도시’로서,⁸⁾ 전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⁹⁾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8) 통계청(2024.2.26.),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

도시화율이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제반여건이 양호하여 제외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해당 5개 자치구를 도시화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역소멸 문제에 직면한 지역을 생활인구¹⁰⁾ 증가 등으로 활성화하려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주기가 5년임을 감안할 때 향후 도시화율이 높지 않은 자치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에 따른 관광단지 지정규모의 축소,¹¹⁾ 지정권한의 이양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관광단지의 남발, 난개발 및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해당 지역(5개 자치구)은 도시지역 비율이 100%임.

1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11) 2024. 7월 기준 관광지 1개소 평균 약 53만㎡, 관광단지 1개소당 약 302만㎡임을 감안할 때, 소규모 관광단지의 경우 규모(5만㎡~30만㎡)가 대폭 축소된 수준임.

특히 현재 ‘관광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¹²⁾ ‘소규모 관광단지’의 경우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관광단지 남발을 방지할 위한 중앙부처차원의 통제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 관광단지’의 도입 근거가 마련되면, 관련 부처, 지자체, 학계·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① 필수시설로 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② 지정규모를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여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소규모 관광단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점과 관련해서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와 사전협의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인바,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2)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대로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규모를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바,¹³⁾

환경부는 해당 지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동 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¹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7

1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1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참고자료 1

인구감소지역 및 시도별 관광지 · 관광단지현황

시·도	인구감소지역(89개)		관광지(225개)		관광단지(51개)	
	개소수	지역명	개소수	관광지명	개소수	관광단지명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5	기장도예촌, 옹호씨사이드,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태종대, 해운대	1	오시리아(기장군)
대구	3	남구, 서구,* 군위군	2	비슬산, 화원	-	-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2	마니산, 서포리	1	강화종합리조트(강화군)
광주	-	-	-	-	1	어등산(광산구)
대전	-	-	-	-	-	-
울산	-	-	-	-	2	강동(북구) 울산 알프스(울주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14	대성, 산장, 수동, 장흥, 용문산, 신록사, 한탄강, 공릉, 임진각, 내리, 백운계곡, 산정호수, 소요산, 궁평	2	안성 죽산(안성시) 평택호(평택시)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42	호반, 구곡폭포, 청평사, 간현, 옥계, 주문진, 연곡, 등명, 대관령 어흘리, 무릉계곡, 망상, 추암, 구문소, 속초해수욕장, 척산온천, 장호, 맹방, 삼척해수욕장, 초당, 팔봉산, 홍천온천, 어담산, 유현문화, 고씨동굴, 영월온천, 마차탄평문화촌, 미탄마하생태, 화암, 아우라지, 고석정, 직탕, 광덕계곡, 후곡약수터, 내설악용대, 방동약수터, 스피디움, 송지호, 삼포 문암, 화진포, 오색, 지경,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교육	16	델피노골프앤리조트, 고성캐슬턴 설악밸리(고성군 2), 설악한화리조트(속초시 1), 양양국제공항(양양군 1), 원주오크밸리, 원주대니아치, 원주루체(원주시 3), 리비에벨, 신영(춘천시 2), 휘닉스파크, 평창용평, 대관령 알펜시아(평창군 3), 비발디파크, 홍천아트밸리(홍천군 2), 웰리힐리파크, 드림마운틴(횡성군 2)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22	서계무술공원, 충암온천, 능암온천, 충주호 체험, 교리, 능강, 금월봉, 계산, 제천온천, 만남의광장, 성내, 속리산레지, 구병산, 장계, 송호, 다리안, 수목정, 괴강, 무극, 천동, 레인보우힐링, 온달	1	증평 에듀팜 특구(증평군)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23	천안종합휴양, 태조산, 곰나루, 마곡사, 미곡온천, 공주문화, 대천해수욕장, 무장포해수욕장, 죽도, 아산온천, 간월도, 삼교호, 왜목마을, 난지도, 구드레, 서동요역사, 금강하구둑, 춘장대해수욕장, 칠갑산도립온천, 예당, 덕산온천, 만리포해수욕장, 안면도	3	백제문화(부여군), 골드힐카운티리조트(천안시), 원산도 대명리조트(보령시)

시·도	인구감소지역(89개)		관 광 지(225개)		관 광 단 지(51개)	
	개 소 수	지 역 명	개 소 수	관 광 지 명	개 소 수	관 광 단 지 명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21	석정온천, 금강호, 은파, 김제온천, 벽골제, 남원, 모항, 변산해수욕장, 위도, 모악산, 금마, 미륵사지, 왕궁보석테마, 웅포, 사선대, 오수익면, 방화동, 내장산리조트, 백제가요정읍사, 마이산화봉온천, 윤일암, 반일암	1	드래곤(남원시)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27	대규모도요지, 곡성 도림사, 지리산온천, 나주호, 담양호, 화산연꽃방죽, 울포 해수욕장, 한국차소리 문화공원, 불갑사, 성기동, 마한문화, 영산호 쌀문화 테마 공원, 신지명사십리, 장성호, 홍길동 테마파크, 정남진우산도, 녹진, 아리랑 마을, 해신장보고, 회동, 사포, 땅끝, 우수영, 도곡온천, 운주사, 화순온천, 대광해수욕장	5	여수 화양, 여수경도 해양, 여수 찰리지파크(여주시 3), 진도 대명리조트(진도군 1), 해남 오시아노(해남군 1)
경북	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32	경산온천, 고령부레, 문경온천, 문경 상리, 오전약수, 다덕약수, 경천대, 문장대온천, 회성나루, 인동하회, 예안현, 고래불, 장사해수욕장, 선바위, 문수, 부석사, 영주순흥, 풍기온천, 치산, 포리, 예천삼강, 개척사, 울릉도, 백암온천, 성류굴, 의성탐산온천, 신화랑, 청도온천, 청도용암온천, 주왕산, 가산산성, 호미곶	7	보문, 감포해양, 마우나오션, 북경주 웰니스(경주시 4), 김천 온천(김천시 1), 안동문화(안동시 1), 웰빙스테이 레포츠(칠곡군 1)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함천군	21	거기대교, 장목, 가조, 수송대, 당항포, 송정, 표충사, 실안, 금서, 전통한방휴양, 중산, 벽계, 오목내, 부곡온천, 마금산 온천, 도남, 묵계, 농월정, 미송산, 합천 보조댐, 합천호	3	거제 남부(거제시 1), 창원 구산해양, 웅동복합레저(창원시 2)
제주	-	-	14	제주남원, 돈내코, 수망, 미천굴, 토산, 표선, 곽지, 제주상상나라탐리공화국, 김녕해수욕장, 돌문화공원, 봉개휴양림, 용머리, 함덕 해안, 협재 해안	8	중문, 성산포해양, 신화역사공원, 제주헬스케어타운, 록인제주(서귀포시 5),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프로젝트 ECO, 묘산봉(제주시 3)

* 인구감소지역(89) 중 부산 서구·동구·영도구(3), 대구 남구·서구(2)는 개정 안에 따른 '소규모 관광단지' 대상에서 제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